

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8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이상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종태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0명)

1. 제안이유

-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 ·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, 심의 · 의결후 위원회를 자동해산하도록 규정(안 제15조제5항)
- 나. 위원장 소집 규정 삭제 (안 제16조제2항)
- 다. 운영필요성이 낮은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삭제 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</u>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<u>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5조(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16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6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 ① <u>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	<p><삭제></p>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
2.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
3.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